자본시장 혁신과제 [1] (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)

# 금융투자업 차이니즈 윌 규제 개선방안

2019. 5. 27.

금 융 위 원 회

# 목 차

l. 추진 배경 ······· 1
Ⅱ. 차이니즈 윌 규제 현황과 문제점 2
Ⅲ. 차이니즈 윌 규제 개선방안 5
1. "업 단위" 규제를 "정보 단위" 규제로 전환 6
2.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 개선 7
3.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 합리화 9
4.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정비 10
Ⅳ. 규제 개선에 따른 이해상충 규제 정비 영향 … 12
V. 향후 추진계획 ·······14

## Ⅰ. 추진 배경

- □ 금융투자업간 겸영 확대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(이하 "차이니즈 월 규제") 도입
  - **이해상충 방지**를 위한 **행위규제\***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교류를 **사전적으로 차단**하는 **별도 규제**를 마련
    - \* 임직원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,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등
  - 차이니즈 월 **설치대상**을 열거하고, 차이니즈 월 간 **정보교류** 금지, 임직원 겸직 금지, 물리적 공간 분리 등을 규정
- □ 우리나라 차이니즈 월 규제는 **규제 대상과 방식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**하는 등 **경직적**인 측면이 있다는 평가
  - 월 규제가 금융투자업자의 **영업과 조직 형태를 세부적**으로 **규정**하여 **겸영허용의 취지**를 살리지 못하고 **역동성**을 저해
- □ 이와 달리 외국의 차이니즈 월 규제는 **자율규제** 형식이거나, **법령은 큰 원칙**만 정하고 세부 내용은 **회사 자율적**으로 운영하는 방식
  - (미국) 법률에서는 증권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의 부정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 구축만을 의무화(SEA §15(g))
    - 월 운영에 관한 **구체적인 방법은 회사가 자율적**으로 정하고, **사고가 발생**할 경우 **엄격한 제재**를 부과
  - (영국) 금융회사가 자기 자신과 고객간 또는 자기 고객과 다른 고객간의 이해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만 선언(FCA Principle 8)하고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에 위임
  - (일본) 고객과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적절하게 감시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 하도록 의무화(금융상품거래법 §36)
  - ⇒ 차이니즈 월 규제가 **자본시장의 역동성**을 저해하고 **과도한 사전적 규제**로 작용함에 따라 **규제를 개선할** 필요

# Ⅱ. 차이니즈 윌 규제 현황과 문제점

# 1

#### 규제 현황

- □ **금융투자업 업무**를 기준으로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**월 설치** 대상을 구분<sup>\*</sup>하여 나열
  - \* ① 고유재산운용업무·투자매매업·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·신탁업 간 설치
    - ②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 설치
    - ③ 전담중개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·금융투자업 간 설치
    - ④ 기업금융업무와 전담중개업무 간 설치
  - 투자매매업 등 '자기재산 운용 업무'와 집합투자·신탁업 등 '타인재산 운용 업무'는 본질적으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 하기 때문에 차이니즈 월 설치를 의무화
  - 기업금융업무\*는 증권발행 계획, M&A 등 기업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금융투자업 전반 및 고유재산운용업무와 구분하여 운영
    - \* 인수, 모집·사모·매출의 주선, 인수·합병의 중개·주선 또는 대리, 인수·합병에 관한 조언, PEF 재산의 운용 업무
  - 전담중개업무\*의 경우, 매매·중개업무와 펀드재산 보관·관리 등 신탁업무를 한 부서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허용하지만,
    - 금융투자회사 내 **다른 부서**와 **전담중개업무 부서**는 원칙적 으로 **분리**하도록 하여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
    - \* 전담중개업무(Prime Brokerage Service):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용 공여, 재산보관·관리 등 재산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업무
      - < 사내 차이니즈 월 설치 범위 (자본시장법 시행령 §50①) >

 고유재산・매매・중개
 자문・ 실 토 입합투자
 의임 집합투자
 ● 실선: 정보교류 차단 부문

 기업금융(Investment Banking)
 등항: 좌우의 사업부 중 한 곳과 통합운용 가능

 전담중개(Prime Brokerage)
 등합운용 가능

- 이 사내 월 규제와 별도로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마련하여,
  - -<sup>①</sup>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, <sup>②</sup>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간, <sup>③</sup>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과 외국 금융 투자업자 간 **차이니즈 월을 설치**하도록 규정하고,
  - 사외 차이니즈 월 간에도 정보교류 금지, 임직원 겸직 금지, 물리적 공간 분리 등을 의무화
- □ 월 설치대상 업무 간에 제한되는 행위를 법령에서 직접 규정
  - **정보교류 금지** 대상 정보로 **금융투자업자**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, **투자자**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, 기업금융업무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규정
  -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 부서간 **임원 및 직원**의 **겸직을 금지**\*
    - \* 대표이사.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제외
  - 사무공간은 벽·칸막이를 통해 공간적으로 분리하고, 전산 자료의 공동열람을 금지하는 한편,
    -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 부서간 독립된 부서구분 및 업무처리 의무, 회의 또는 통신시 기록 유지 의무 등을 규정
- □ Wall-cross 조항을 두어 월 간 예외적 정보교류를 허용
  - 정보제공의 **상당한 이유**가 있는 경우, 관련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**승인**을 받아 업무상 필요한 **최소한 범위 내**에서 **정보제공 가능**
- □ 사전적 차이니즈 월 규제 이외에 **이해상충 방지**를 위한 **직접적** 행위 규제\*도 두어 이중적으로 규제
  - \* 기업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하는 행위(insider trading), 선행매매 (front running), 펀드 재산으로 금투업자가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

# 2 문제점

- □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**법령에서 직접 차이니즈 월을 규정**하고 있어 **자율성**을 제약하는 측면
  - 특히,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이니즈 월 규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신속한 도입이 어려움\*
    - \* (예) 기업의 인수·합병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할 필요성이 있으나,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간의 분리로 인해 기업금융고객에게 관련 파생상품 거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곤란
  -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금융투자업자의 조직·인사 및 업무분장을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제
    - 금융투자업자별 **사업 모델에 따른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저해\***하고 금융투자업의 **경쟁력 제고를 저해**하는 요인
    - \* (예) 대표이사의 부재 또는 일시적 업무 수행 곤란시 회사 업무를 부사장 등에게 총괄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, 대표이사·감사 외에는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없음
- □ 차이니즈 월 **설치 대상 업무**가 **겸영확대** 추세 및 진화하는 **금융 투자업 업무**와 **일치하지 않아** 현실성이 낮은 규제로 작용
  - **금융투자업 정의**에 따른 현행 차이니즈 월 규제는 금융투자 회사의 실제 업무에 따른 **이상적 조직운영과 상이**\*한 측면
    - \* 증권사 조직은 통상 자기자본투자, 인수, WM, 중개 등으로 구분되나,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은 투자매매업,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 단위로 정의되어 정보교류 차단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곤란
  - 특히, 기업금융부서를 중심으로 복합적 업무 수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, 법령상 기업금융업무\*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차이니즈 월 예외 인정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다수 발생
    - \* 인수, 모집·사모·매출의 주선,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·주선 또는 대리, 기업의 인수·합병에 대한 조언업무 등(자본시장법 시행령 §68②)
- ☐ 금융투자업자의 **특화ㆍ전문화** 유도라는 **인가정책 방향**과도 **배치** 
  - **업무간 시너지**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하여 회사별 **영업** 전략이 유사해지고, 자본규모에 의해 경쟁력이 좌우되는 상황

# Ⅲ. 차이니즈 윌 규제 개선방안

#### 기본방향

- ◈ 차이니즈 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 제고
  - 법령에서 규제 대상과 형식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,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·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
- ◈ 차이니즈 월 규제를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
  - 회사의 조직·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이해상충 관련 행위규제를 통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개선
  - 차이니즈 월 규제 관련 회사의 **자율성 강화**에 맞추어 이해 상충 행위에 대한 **사후제재를 강화**하고 회사의 **책임성 강화**

#### 현 행

과제1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"업 단위"로 구분

과제2

과제3

과제4

법령에서 교류금지 대상 정보, 인적교류 금지, 물리적 차단 의무 등을 직접 규정

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법령에서 규제 대상과 형식을 직접 규정

사전규제 중심으로 사후제재는 미흡 개 선

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
"정보 단위"별로 월 설치대상 구분

법령에서는 차이니즈 월규제의 원칙만 정하고운영 방식은 회사가 자율적 설계

사외 월 규제도 사내 월 규제와 동일 원칙을 적용하고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완화

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정비 및 사후제재 강화

차이니즈 월 규제의 실효성·자율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의 역동성과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

#### 과제1

#### **"업 단위" 규제를 "정보 단위" 규제로 전환**

#### 가. 현황 및 문제점

- □ **금융투자업 업무**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"업 단위" 칸막이 규제 방식
  - **새로운 유형의 업** 출현시 **새로운 월** 설치 여부 및 금지행위 등을 **법령**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
  - 기존 업무에서 발전된 **새로운 업무** 수행시 **허용여부** 등에 대한 **불확실성**이 큰 상황

- □ "업 단위" 규제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"정보 단위"별 규제로 전환
  -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**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**를 유형별로 **포괄적으로 구분**하고 **정보의 특성**에 맞추어 규제 원칙을 마련
  - 정보의 종류를 **전통적 증권업**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'미공개 중요정보'와 고객재산 관리·운영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'고객 자산 운용정보'로 구분
- □ 미공개 중요정보\*의 경우 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
  -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시 **정보의 활용을 금지**하는 **절차를 마련** 
    - \*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- □ 고객자산 운용정보\*의 경우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거나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본인, 이해관계자 및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절차를 마련
  - \*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, 집합투자재산·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

### 과제2 차이니즈 윌 규제 형식 개선

#### 가. 현황 및 문제점

- □ 자율규제 형식으로 정할 세부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회사별 특성과 경영전략 등이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
  - **자율성**이 보장되어야 할 회사의 **조직·인사운영**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강제하게 되는 결과
  - 이 새로운 업무 확장을 위한 신축적 대응이 곤란하고, 예외의 예외를 만드는 등 규제의 복잡성이 커지고 규제 준수비용도 증가

- □ 법령에서 월 설치대상, 행위 규제,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필수 워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
  - **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** 위한 **기본원칙**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\*하고,
    - \* (예)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.
  - 시행령 등 **하위규정**에서 **내부통제기준에 포함**되어야 할 필수 원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
- □ 규제 대상 정보별로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과 공통 워칙을 제시
  - ① 미공개 중요정보는 정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절차를 중심으로 규제
    - (원칙1) 금융투자업자는 미공개 중요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, 미공개 중요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차단 절차 수립을 의무화

- (원칙2) 금융투자업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할 권한이 없는 자가 미공개 중요정보가 생산될 수 있는 조직에 상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
- (원칙3) 금융투자업자가 회사 내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할 경우 취득할 권한이 없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
- (원칙4) 금융투자업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이익추구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
- ② 고객자산 운용정보는 정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 하여 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차단하도록 규정
  - (원칙5) 집합투자업, 신탁업을 수행하는 부서\*와 다른 금융 투자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독립된 부서로 구분\*\*
  - \* 집합투자재산 및 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및 집합 투자재산·신탁재산 중 금융투자상품을 보관·관리하는 업무만 해당
  - \*\* 단,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브로커리지 업무와 수탁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전담중개업무(프라임브로커리지) 수행시에는 해당 부문에 대한 통합 운영 허용
  - (원칙6) 집합투자업, 신탁업 수행시 발생한 고객재산 매매정보, 운용정보, 소유재산 정보를 타 부서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
- ③ 공통원칙으로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의무와 정보제공 관련 기록을 유지·관리할 의무를 규정
  - (원칙7) 금융투자업자는 상시적 정보교류 차단장치 범위 밖에 있는 정보 제공과 관련된 내부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
  - (원칙8) 법령상 보고·공시 의무 이행,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의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적 정보교류를 허용
  - (원칙9) 예외적 정보교류 및 정보교류 차단장치 범위 밖의 정보 제공시에는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·관리
- □ 임직원 겸직제한 등 **인적교류 금지**, 사무공간 분리 등 **물리적 차단 의무**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**폐지**

### 과제3 사외 차이니즈 윌 규제 합리화

#### 가. 현황 및 문제점

- □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동일하게 규제 대상과 형식을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경직성이 높은 상황
  - 특히,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규제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,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비해 자율성이 낮다는 평가
- □ 이로 인해 임직원 겪직 등을 통한 계열회사 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**효율적 조직운영에 애로**가 있다는 평가\*
  - \* (예)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은행과 증권회사를 별도로 설립ㆍ운영함에 있어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겸직·파견 등의 방법으로 인력을 공동 활용하고자 하나 차이니즈 월 규제로 인해 곤란한 상황

- □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차이니즈 월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
  - 계열회사 등 외부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전환
  -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\* 수준으로 위화
    - \* (자본시장법) 원칙적으로 임직원의 겸직은 제한되며,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(예 :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투업자의 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 겸직 가능) (지배구조법) 원칙적으로 임직원의 겸직은 제한되나. 이해상충 우려가 적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겸직 승인 및 보고 절차 등을 통해 겸직 허용
- ☐ **물리적 차단 의무** 등 형식적 · 경직적 규제는 법령에서 **폐지**

### 과제4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정비

#### 가. 현황 및 문제점

- □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전적 월 규제와 별도로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행위규제\*를 두는 이중적 · 중복적 규제 체계
  - 차이니즈 월 규제를 **규제대상 정보별 규제**로 전환하는 방식에 맞추어 **직접적 행위규제도 조정·보완**할 필요
- □ 월 규제 및 이해상충 행위 규제 위반시 **신분적 제재**\* 중심으로 제재가 이루어짐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
  - \*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의 전부·일부정지,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명령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 등 신분적 제재
  - **사후제**재를 강화하고 억제 효과가 큰 **금전제재를 강화**할 필요

- □ 금융투자업자의 **차이니즈 월** 운영과 관련된 **회사의 내부통제를** 강화하기 위한 행위규제를 별도 신설
  - (미공개중요정보 판단절차 마련) 특정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한 경우,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감시 부서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,
    - 준법감시 부서의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를 미공개중요정보로 분류·관리
  - **(차이니즈 월 관련 주기적 점검)** 정보교류차단 절차의 **적절성**과 차이니즈 월 관련 임직원 매매 및 고유계정거래를 주기적 으로 점검할 의무 부과
  - (차이니즈 월 관련 교육) 차이니즈 월 관련 법규 및 내부통제 기준 등에 대한 임직원 교육 의무 신설

- □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에 맞추어 **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규제** 하는 **행위규제를 보완** 
  - (고객정보의 이용 금지) 자본시장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규제\*(§54)를 구체화하여 고객정보를 이용한 이해상충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\*\*를 추가
    - \* 직무상 알게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금지
    - \*\* 집합투자업, 신탁업 수행시 고객재산 운용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행위금지 등
  -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된 협회 자율규제를 법령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
    - (미공개중요정보 발생시 거래제한) M&A자문, 지분매각 중개· 주선 등 IB 업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가 발생할 경우,
      - 관련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권유, 회사 및 임직원의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제한
    - (조사분석자료 사전제공 금지)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미리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\*
    - \*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경과 전 관련 금융투자상품을 자기 계산 으로 매매하는 행위의 금지는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에 旣 규정
- □ **내부통제 미흡**으로 **이해상충 방지** 관련 **행위규제 위반** 등 불법 행위 발생시 **사후제재를 강화** 
  -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**내부통제기준을 위반**한 경우, 관련 행위규제 위반 사항 제재시 **가중하여 제재**\*
    - \* (예)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위반으로 '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'(자본시장법 §174) 관련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중 제재
  -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 이용 등으로 **투자자 피해**가 발생하거나 **시장질서가 교란**된 경우 **과징금**을 부과
    - \* 투자자 피해를 이기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

# Ⅳ. 규제 개선에 따른 이해상충 규제 정비 영향

# 1. 차이니즈 윌 관련 법령 단순화

□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

구 분	현 행	개 선
	(§45)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<b>금지되는 행위</b> 를 직접 규정	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<b>내부통제</b> <b>기준 마련 의무</b> 만 규정
	-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	
자본시장법	- 임원(대표이사, 감사 및 사외 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 제외) 및 직원을 겸직 하게 하는 행위	
	-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	

□ 시행령에서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자산 운용정보 관련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**필수원칙**만 규정

구 분	현 행	개 선
자본시장법 시행령	(§50①)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업 단위로 구분하여 나열  - 고유재산운용업무·투자매매업·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·신탁업 간  -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·금융투자업 간  - 전담중개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·금융투자업 간  - 기업금융업무와 전담중개업무 간	<sup>①</sup> 미공개 중요정보와 <sup>②</sup> 고객자산 운용정보에 대한 정보교류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월 설치 대상을 규정
	(§502~④) 교류가 금지되는 정보의 종류, 물리적 차단의 세부 방식 등 <b>차이니즈 월 규제</b> <b>형식</b> 을 세세히 규정	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<b>필수</b> <b>원칙</b> 만 규정

#### 2. 개선 전 · 후 차이니즈 윌 규제방식 비교

- □ 금융투자업 "업 단위" 규제 방식 →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"정보별" 월 설치 규제 방식으로 개선
  - 월 규제 방식도 **임직원 겸직금지·물리적 공간분리** 방식 → **정보교류를 차단**하고 **적절하게 관리하는 절차**를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변경
- □ **정보교류 차단**이 필요한 경우가 보다 **포괄적으로 규정**됨에 따라 **차이니즈 월 적용대상** 부서의 범위가 **확대**\*
  - \* (현행) Whole sale 부서와 리서치 센터는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에서 제외 → (개선)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시 차이니즈 월 설치 필요

#### <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 전후 비교 >

증권사 조직	현행 차이나즈월 적용여부	행위규제	개선후 차이나즈월 적용여부	개선 후 차이니즈 월 적용방식
PI	0	선행매매금지(§71 i ), 직무관련 정보이용금지(§54), 미공개정보 이용금지(§174)	0	-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시 정보교류 차단
IB	0	선행매매금지(§71 i ), 직무관련 정보이용금지(§54), 미공개정보 이용금지(§174)	0	-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시 정보교류 차단
Whole sale	Х	선행매매금지(§71 i ), 직무관련 정보이용금지(§54), 미공개정보 이용금지(§174)	0	-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시 정보교류 차단
리서치 센터	X	24시간 매매금지, 기업금융부서와 성과보수 연동금지(§71), 직무관련 정보이용금지(§54), 미공개정보 이용금지(§174)	0	-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시 정보교류 차단
신탁	0	자기 운영 집합투자재산의 신탁업 겸영 금지(§184④)	0	- 고객자산 운용정보 관련 상시적 정보교류 차단
집합 운용	0	자기・관계인 인수증권 매수 금지(§85 ii), 자기거래 금지(§85 v), 매매회전율 고객 통지(§88②iv), 자기이익취득 금지(§85iv), 과당매매 금지(§85viii), 부당권유 금지(§49 i ii)	0	- 고객자산 운용정보 관련 상시적 정보교류 차단

# Ⅴ. 향후 추진계획

- □ 자본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
  - '19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
  - 법안 통과 시,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
- □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
  - TF 구성\*('19.6월중)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'내부통제기준 표준안' 등 가이드라인 마련
    - \* 금융위, 금감원, 금융투자협회, 금융투자회사,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
  - 금융당국의 **유권해석 맟 비조치의견서**를 활성화하여 원칙 규제 전환에 따른 **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**

#### < 과제별 필요 조치사항 >

추진 과제	필요 조치사항
① "업 단위" 규제를 "정보 단위" 규제로 전환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
②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 개선	
-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	자본시장법 개정
-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 원칙 규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
- 인적교류 금지, 물리적 차단 의무 등 삭제	자본시장법 개정
③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 합리화	자본시장법 개정
④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정비	
- 이해상충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관련 행위규제 보완	자본시장법 개정
- 이해상충 방지 관련 행위규제 위반시 사후제재 강화	자본시장법 개정

# 차이니즈 윌 규제 현황

규제	사내 정보교류 차단	사외 정보교류 차단
차이니즈 월 설치대상	- 고유재산 운용, 투자매매. 중개업 / 집합투자.신탁업 - 기업금융업무 / 고유재산 운용, 다른 금융투자업 - 전담중개업무 / 고유재산 운용, 다른 금융투자업 - 기업금융업무 / 전담중개업무	- 금융투자업자 / 계열사 - 집합투자업자 / 판매사 -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 / 외국 금융투자업자
교류 금지대상 정보	-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.소유 정보 - 집합투자,투자일임,신탁재산의 금융투자상품 운용.보관 정보 - 기업금융 관련 미공개정보	-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금감원장의 인정을 받아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 정보 등 일부 예외 인정
임직원 겸직 금지	-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 부서간 임원 및 직원의 겸직을 금지 - 대표이사,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제외	- 원칙적으로 비상근 감사를 제외한 임원 겸직 및 직원 파견 금지 -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 업자의 상근 임직원이 집합 투자업을 경영하지 않은 계열 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인정
사무공간.전산설비 공동이용 금지	- 사무공간은 벽.칸막이를 통해 공간적으로 분리하고, 전산 자료의 공동열람 금지	- 좌동
Wall-Cross 기준 및 절차	- 정보제공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- 업무필요상 최소한 범위 - 임원 및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-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·관리 -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	- 집합·일임·신탁재산의 구성· 운용정보가 아닐 것 - 정보제공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- 업무 필요상 최소한 범위 - 해당 관장 임원 및 준법 감시인 사전승인 -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·관리 -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 체결

# 참고2

# 금융투자업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현황

- □ **직무관련 정보** 이용금지, **미공개중요정보** 이용금지 규정 등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**부정한 정보 활용**을 포괄적으로 **규제**
- □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**집합투자업자** 등에 대해서는 **선행매매** 금지, **과당매매** 금지 등 보다 **세분화된 행위규제**를 마련

#### <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>

구분	이해상충 유형	자본시장법상 금지규정		
기업금융 / 매매・집합	▶ 기업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하는 행위 (insider trading)	직무관련 정보이용금지(§54),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(§174)		
매매・중개 / 고유	► 투자자의 매수·매도주문 체결 전 고유계정에서의 선행매매(front running)	선행매매금지(§71 i )		
집합 / 매매	► 펀드재산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한 증권을 매수 하는 행위(dumping)	자기·관계인 인수증권 매수 금지 (§85ii)		
집합 / 매매	► 금융투자업자 보유증권을 펀드에서 매수하거나 펀드보유 증권을 금융투자업자가 매수(dumping)	자기거래 금지 (§85v)		
집합 / 중개	► 중개부서의 수익확대를 위해 펀드재산으로 주식을 지나치게 빈번하게 매매하는 행위(churning)	매매회전율 고객 통지(§882)iv), 자기이익취득 금지(§85iv), 과당매매금지(§85viii)		
집합 / 신탁	► 신탁부서가 회사이익을 위해 집합투자부서의 자산운용 감시 해태	자기 운영 집합투자재산의 신탁업 겸영 금지 (§184④)		
집합 / 고유	► 펀드 운용정보를 이용하여 고유계정으로 먼저 매매하는 행위(front running)	선행매매금지(§85 i )		
신탁 / 집합	► 신탁부서가 회사 이익을 위해 집합투자부서의 자산운용을 적정성을 감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	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자산의 보관관리 신탁은 제3의 기관에 맡기도록 의무화(§184④)		
집합 / 타사	► 펀드재산으로 펀드판매나 조사보고서 대가,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 지불	soft-dollar 제공 금지(§85viii)		

#### 참고3

## 해외 차이니즈 윌 규제 현황

# 1 미국

- □ 법률은 증권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의 부정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 구축을 의무화(SEA §15(g))
  - 회사규모, 취급업무의 성격·범위에 따라 적절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\*
    - \* 법률에서는 SEC에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규정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, SEC는 업계 실태점검 결과 추가적 규정제정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
- □ 차이니즈 월 운영에 관한 **구체적인 방법**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, SEC는 **실태점검을** 통해 **가이드라인 마련**('90)
  - 차이니즈 월이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로 임직원 매매 및 고유 계정 거래에 대한 점검, 차이니즈 월 운영 관련 기록 및 문서화, 부서간 정보교류에 대한 준법감시부서의 감독 등을 제시
- □ 위반시 **민사소송, 중지명령, 증권업 등록 취소·정지** 등 제재 가능

# 2 영국

- □ 법률은 부정한 목적의 정보교류 및 이용 차단을 위한 정보 교류 차단규제를 마련할 것을 FCA에 요구(FSMA §147)
  - FCA는 금융회사가 자기 자신과 고객간 또는 자기 고객과 다른 고객간의 이해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만 선언(FCA Principle 8)하고 세부 운영방식은 회사에 위임
- □ 위반시 **민사·행정·형사 제재** 가능

# 3 일 본

- □ 법률은 **불공정거래 방지**를 위한 조치 의무(금융상품거래법 §40)와 함께,
  - 고객과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 하고 관련 업무를 적절하게 감시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도록 의무화(금융상품거래법 §36)
  - o 차이니즈 월의 세부 운용방법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영
- □ 위반시 업무개선명령,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정지, 등록취소, 임원해임 등 **행정제재** 가능

# 4 독 일

- □ 독일 **증권거래법은 차이니즈 월**에 대한 **명시적 규제**를 두고 있지 **않음** 
  - 다만, 직원들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마련, 부문별 이해 상충 및 직원, 고객 등과의 이해상충 관리 절차를 영구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원칙만을 규정(WpHG section 33 (1))
- □ 독일 금융감독청(BaFin)은 **가이드라인**을 발표('10.5월)하여 **정보 차단 방법, Wall-cross 절차, 거래금지 리스트 운영** 등 차이 니즈 월에 대한 원칙을 제시

# 5 홍 콩

- □ HKMA의 감독정책 매뉴얼은 이해상충행위 규제의 일환으로 정보교류 차단규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
  - HKMA의 매뉴얼은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**일반원칙**만 정하고, 세부 운용방법은 회사 자율에 위임
- □ 위반시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 가능